보건복지부	보도자료	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	2026. 10. 19.(월) 조간 2026. 10. 18.(일) 12:00	배포	2026. 10. 16.(금)

비대면진료 실시·처방기준 구체화하여 입법예고
6개월 내 같은 증상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

- 초진 비대면진료, 환자 주소지의 시·도 내 의원에서 허용,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원칙 -
-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신고·인증기준 마련 -
-「의료법 시행규칙」 및「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-
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2026년 10월 19일(월)부터 11월 9일(월)까지 개정 「의료법」('26.12.24. 시행)에 따라 **대면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실시**할 수 있도록 대상환자, 의약품 처방기준,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실시기준 및 비대면진료 중개매체*의 신고·인증 등에 관한 **세부사항을 정한**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및 「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」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

* 비대면진료 중개매체: 비대면진료 요청의 확인·진료 실시 등을 위해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(모바일 앱 포함)

아울러 지난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「의료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도 함께 안내한다.

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>

첫째, 일반 비대면진료*와 초진 비대면진료의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을 구체화한다.**

* 일반 비대면진료: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

** 초진 비대면진료: 위 대면진료 이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(해당 의료기관에서 처음 진료받는 경우, 동일 증상 대면진료 후 6개월이 지난 경우, 최근 대면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다른 경우 등)

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**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**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초진 비대면진료는 이러한 대면진료 이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**동일한 시·도**에 위치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.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.

또한 희귀질환자, 제1형 당뇨병 환자, 등록장애인,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동일 시·도 밖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.(안 제31조의2)

비대면진료는 **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**으로 하되, 희귀질환자, 수술·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다.(안 제31조의4)

둘째,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기준과 비대면진료 시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의 범위를 정한다.

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**7일 이내**로 제한한다. 다만,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이력 및 처방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**1회에 한해 30일 이내**로 처방할 수 있도록 한다.(안 제31조의3)

아울러 비대면진료 시 **마약·향정신성의약품, 오·남용 우려 의약품, 비만치료제**의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, 그 밖에 오·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. 다만,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마약·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.(안 제31조의10)

셋째,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실시비율과 의료인별 진료건수 기준을 마련한다.

의료기관의 **비대면진료 건수**는 **반기별 전체 진료건수의 30% 이내**로 제한하고,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**의사 500건, 치과의사·한의사 130건 이내**로 정한다. 다만, 야간·휴일 진료 등은 산정에서 제외한다.(안 제31조의7)

또한 의료인이 비대면진료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대상환자 요건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, **화상통신**을 **원칙**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음성통신을 허용하는 등 구체적인 진료 절차를 마련한다.(안 제31조의5 및 제31조의11)

넷째, 비대면진료 시 조제의약품 인도 가능 지역 및 인도 시 준수사항을 마련한다.

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**인도할 수 있는 지역**과 **인도 업무 위탁** 근거를 마련하고, **약국개설자**의 **복약지도** 및 **배송업자**의 **배송 약관 마련 등** 인도에 있어 **준수해야 할 사항**을 마련한다.

또한 의약품 무상 제공 등 환자 유인행위와 의약품 배송업자의 부당한 금품 제공(리베이트) 등을 금지하고,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한다.(안 제31조의13 및 제31조의14)

그 밖에도 **비대면진료 전담 약국** 등을 **방지**하기 위한 **약사법 보완 입법**을 추진할 예정이다.

다섯째,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 및 인증기준을 마련한다.

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·운영하려는 자는 중개매체의 명칭, 운영방식, 이용료,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한다.

또한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**누적 가입자 수가 10만 명 이상**인 경우 중개업자가 **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**하도록 하고, 인증 시 중개 기능의 적정성, 본인확인 절차, 정보 보호 및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도록 한다.(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0까지)

그 밖에도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, 전자처방전 작성·발송, 비대면진료지원 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.

<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>

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대규모 재난·의료공급 차질 등으로 대면진료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비대면진료 기준을 **한시적으로 완화**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정한다.(안 제16조의3)

또한 비대면진료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관련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,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·운영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,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 접수 및 인증 평가·조사 등의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위탁하도록 한다.

그 밖에도 관련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, 민감정보 처리 근거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마련한다.

<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안 >

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하고, 비대면진료 대상환자, 의약품 처방 제한 및 화상통신 기준 등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기준을 마련한다.

또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·인증 의무 위반, 개인정보 부당 처리 등에 대해 **시정명령, 영업정지 및 신고수리 취소**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다.

아울러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고시 제정안도 마련 중이다.

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,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및 「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」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11월 9일(월)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(의약품 인도 관련 사항은 약무정책과)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.

※「의료법 시행령」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은 2026년 11월 2일(월)이다.

< 의견 제출방법 >

○ **제출처(의약품 인도 외 사항)**

- 주소: (3011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,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의료정보정책과
  * 전화 : (044) 202 – 2612, 전자우편 : joohun6861@korea.kr

○ **제출처(의약품 인도 관련 사항)**

- 주소: (3011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,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약무정책과
  * 전화 : (044) 202 – 2491, 전자우편 : younie80@korea.kr

○ **기재사항**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여부와 그 의견)
- 성명(법인・단체는 법인・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**국민참여입법센터**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

<별첨> 1.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2.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
3.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담당 부서	첨단의료지원관 의료정보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민정 (044-202-2610)
		담당자	사무관	박진균 (044-202-2607)
			사무관	김하슬 (044-202-2613)
	보건의료정책관 약무정책과	책임자	과 장	양명철 (044-202-2490)
		담당자	사무관	정아영 (044-202-2492)